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528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52881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19 선고 2021가합1020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유한회사 A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광필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최성일

변론종결 2024. 4. 3.

판결선고 2024. 5. 2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19. 선고 2021가합1020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D이 2020. 4. 10.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체결한 합의 중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각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주식회사 E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부분을 1,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1,00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7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D이 E과 이 사건 제3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수인지위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그것이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수인지위는 D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점, D이 E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원고들과 E 등에게 투자원금 및 원금의 2배 또는 2배가 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20. 4. 10.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8. 7. E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피고와 이 사건 제5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지위가 피고에게 이전되어 2020. 10. 30.부터 2020. 12. 18.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에 이르러 결국 D은 아무런 책임재산도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D이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여 그 사해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박원근, 판사 김영환

별지